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의명 :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3. 11. 20(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음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1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2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의결사항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3-41-149)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5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32개사에 대한 시설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 ·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내용입니다. 운용채널변경과 관련해서 아날로그 지상파재송신 채널 중복송출 종료 사항입니다. 티브로드 종로중구방송은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기존에 아날로그 지상파 신호의 채널 간섭현상을 고려하여 중복송출하던 지상파재송신 채널을 단일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날로그 지상파재송신 채널번호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티브로드 전주방송이 대표적인 아날로그 지상파 재송신 채널번호로 조정하기 위해 채널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티브로드 낙동방송이 인근 티브로드 동남방송과 공동으로 주전송장치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티브로드 동남방송과 동일한 채널번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변경입니다. 디지털 채널 증설 등을 위한 변조기 변경 · 추가 사안입니다. 티브로드 계열 5개사의 경우에는 디지털 채널 증설을 위해 디지털 변조기를 변경 · 추가하고자 하며, CJ헬로비전 계열 10개사는 VOD로 사용 중인 4개 채널을 디지털 방송채널로 변경하기 위해 VOD변조기를 철거하고 디지털 변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CJ헬로비전 영동방송은 서비스가 종료된 디지털방송 채널 4개를 VOD 채널로 변경하기 위해 디지털변조기를 철거하고 VOD변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단일채널 변조기를 멀티채널 변조기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씨앤앰 계열 16개사는 장비 효율화를 위해 노후화된 단일채널 변조기를 멀티채널 변조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변경허가 대상 여부입니다. 본 건은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안으로 방송법령상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미래부 심사결과입니다. 미래부는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32개사의 시설 변경은 디지털전환 촉진 및 방송서비스 다양화 등을 위한 것으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므로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설변경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술 ·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동 건은 역시 시설변경에 관한 것으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래부 심사 결과와 외부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래부의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32개사에 대한 시설변경 허가에는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의 일부 아날로그 지상파 재송신 채널번호가 대표적인 지상파 재송신 채널번호와 상이함에 따라 시청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고려하여서 전파 간섭 등 장애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채널번호를 대표적인 지상파 재송신 채널번호로 일치시키기 위한 통일화 정책 추진을 미래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본 건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미래부에 통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ETRI가 기술심사를 했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방통위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 변경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동의해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획조정실장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도와 관련해서 방통위와 미래부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엇박자처럼 오인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 우선 국민들이 볼 때도 불편사납고, 또 공직에 종사하는 우리들로서 민망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실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향성의 차이는 있을 정도인데요. 보도에서 예를 들면 중간광고의 경우에 허용할 방침이 전혀 없는 또 그런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인데 밖에 와전되어서 미래부 때문에 허용할 것 같이 보도가 나갔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지금 양 부처 간에 사전적인 협의기구는 있는데 보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이 손을 잡든지 기획조정실장끼리 손을 잡아서 보도자료를 낼 때 사전 조율을 하십시오. 그것은 어렵지 않겠지요?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래부 실장급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본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채널번호가 아직도 지상파 고유번호와 많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의사항으로 해 놓았지만 용어가 '미래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미래에 권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행정용어상 '건의'와 '권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말입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한자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건의는 의견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제의가 수평적인 관계에 있

어서의 표현이고, 견의는 밑에서 위로 올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높임말입니다. 지금 표현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 홍성규 상임위원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견의는 적절하지 않고 제의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제의가 됐건 권고가 됐건 다른 표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아니지요. 이런 것은 작은 말 하나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검토할 때 용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안입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기획조정실장님, 이런 단어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현들, 특히 견의라는 단어들이 방송정책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계속 표현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한 번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검토해 보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검토를 했는데….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이것이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지 검토하고, 제가 봐도 견의가 하에서 상으로 하는 느낌이 듭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견배할 때 들 견자, 세울 견자를 쓰지 않습니까? 의미가 그렇다니까요.

○ 이경재 위원장

- 검토의견에 시청자 편의제고를 위해 지상파 재송신 채널번호 변경과 관련해서 중앙채널과

일치시켰으면 좋겠다는 권고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티브로드 종로중구방송도 그렇고 번호가 이상하게 올라와서, 다른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수정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볼 때 이것이 그런 번호가 아니었는데 맞추면 좋겠다고 해서 고쳤는데, 지금 방송은 KBS2가 7번인데 1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홈쇼핑 채널이 7번을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이 주가 되고 공영방송이 부가 되는 식은 너무 상업적인 생각이 짙지 않나, 아마도 계약기간이 있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빨리 시정하도록 하고, 계약 사본을 보내서 하여튼 MBC도 그렇고 다른 것들을 지역에서 멋대로 하는데 전 국민들이 1일 생활권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듣기도 나쁘지 않습니까? 더구나 공영방송은 전국적인 방송인데 번호가 제 각기 달라서 되겠습니까? 또 보도채널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는건데, 정확하게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다른 것이 뭔지 모르지만, 허가사항이 일어나서 방통위에서 주관하는 보도채널과, 미래부에서는 보도채널이 아니라는 사실은, 염연히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만 최근 유사보도에 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 (주)현대HCN포항방송 (2013-41-150)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15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주)현대HCN포항방송의 법인합병에 따른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현대 HCN포항방송이 모기업인 (주)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를 경영효율화를 위해 합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본 건에 대한 미래부 심사결과는 (주)현대HCN포항방송이 그 모회사인 (주)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와 법인합병하기 위한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요구한 대로 변경허가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부자문단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주)현대HCN포항방송이 전송망 유지보수업체인 모회사와 합병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서 방송서비스 및 사업구역에 변동이 없으며,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등 방송법령상 심사사항을 고려할 경우 변경허가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래부 심사결과와 외부자문단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주)현대HCN포항방송의 (주)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와의 법인합병 변경허가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미래부에 통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2013-41-151)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다>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8월에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은 생략하고,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에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사전 규제심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규정 제정안에 대한 위원회 보고가 지난 9월 26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계부처 의견조회, 행정예고, 부패영향평가를 받은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고시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재정신청 방법 및 절차입니다. 신청인은 재정신청의 목적과 협의경과 등이 포함된 재정신청서를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방통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재정결정 이전까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재정신청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하거나 재정신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정방법 및 절차입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방통위 의결로 1회, 90일 연장 가능합니다. 재정기간 중 일방의 당사자가 재정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합니다. 그다음에 방통위는 재정과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방통위의 재정은 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방통위는 재정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재정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당사자가 재정문서 송달 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 번째, 분쟁알선 방법 및 절차입니다. 방통위는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알선분과위원회는 통신, 법률, 소비자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사자가 자율적인 합의해결을 원하는 경우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 등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토록 합니다. 알선기간 내에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합의한 경우에는 알선절차를 종결하고, 일방의 당사자가 알선을 거부하거나, 알선과정에서 분쟁해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재개토록 합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의결해주시면 관보 게재 후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3-41-152)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추진경과는 지난 9월에 개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바 있고, 9월 17일~11월 4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11월 8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위치정보 사업 진입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은 사람의 위치정보인지, 사물의 위치정보인지 관계없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는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 · 신고 의무를 면제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의 허가 등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입니다. 사업의 허가,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 분할 인가, 사업의 휴지 · 폐지 승인에 있어 허가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만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매회 즉시 통보” 규정을 완화해서 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위치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본인에게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본인이 미리 요청하는 경우 일정 기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먼저 저희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현재 긴급구조기관에서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대상자”的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데,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신속하게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주요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출의견은 최재천 의원실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가족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의 간소화로, 개인정보의 오 · 남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의 검토의견은 긴급구조기관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출동을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이 위치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며, 또 권한 없는 신고자에게 위치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지침 마련 등을 긴급구조기관과 협의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소방방재청 등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서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시정조

치 근거 마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등을 위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개정된 「민법」의 성년 후견·한정후견 제도를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내용은 현재 미성년자·금치 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는 법무부에서 의견을 주었는데 '피한정후견인'은 기존의 한정치산자와는 달리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한정후견인'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결과는 개인의 현존하는 능력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한정후견인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피한정후견인'은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해서 법무부 의견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다섯 번째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법제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양수, 합병·분할 인가 기준, 휴·폐지 승인 제한사유,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시 통보규정의 체계 및 자구 등을 개정 취지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에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제도개선을 보면 문제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제시해 주고 그 사례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내용들을 하나 설명해 보십시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를 들어 누가 긴급한 지역에 있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지만 금전 거래관계, 이런 문제로 인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신고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서 제3자가 전화를 통해 구조기관에 불러줄 경우 그 사람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구조기관이 통신사의 위치를 파악하더라도 신고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오·남용의 우려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남편이 두들겨 패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내를 때린 사람이 긴급한 구조요청 위치정보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매 맞는 아내와 남편은 둘만이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의 관계를 알 뿐이지만 객관적으로 부부관계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찾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긴급구조기관으로서는 긴급구조를 요청받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위치를 알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구조기관은 남편이라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그 위치를 남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조하려만 갈 뿐이지 위치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위치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남편이 신고를 했는데….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신고를 해도 배우자를 구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해 주는 목적으로만….

○ 양문석 상임위원

- “구해 달라”와 “찾아달라”는 의미가 다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찾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긴급구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구조를 하려 나갈 뿐이지 신고한 사람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어쨌든 나중에는 알려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 알려줄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 사람을 구조했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그 사람의 위치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구조를 했는데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위치를 알려줄니까?

○ 김충식 부위원장

- 본인 의사의 반해서, 매 맞는 아내의 의사에 반해서 위치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 보장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피구조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그 이야기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이 건은 소방방재청에서 저에게도 의뢰가 왔었고, 실제 업무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그것이 차제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양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작용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법무부에서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 수정한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6. 보고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를 반영하고,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입니다. 현재 본인확인기간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본인확인 업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누출 등 침해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입증 없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액 과징금을 다른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정률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1% 이하)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구체적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기간 상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과징금 징수채권 소멸시효 5년에 맞추어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기간도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징금 체납시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위원회 보고 후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하고 그 후에 위원회 의결을 마친 후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변화로 봐야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슨과 관련해서 입장을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 당시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아직...

○ 양문석 상임위원

- 인과관계를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나오기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훨씬 더 빨리 진화하는 부분들에 대해 고민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무한책임, 무한과실을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토할 것이고, 그리고 해커가 우리보다 더 빨리 진화한다고 하면서 불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업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이것 보고하고 나면 공청회하고 의견수렴할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해서 아주 상세하게 고민해야겠다, 해커와의 싸움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가, 해커의 진화보다 순수 진화를 더 빨리 하라고 던져버릴 것인가, 이 두 가치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언급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 내용은 법을 개정하는 안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냥 보고만 하는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법률개정안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런데 왜 <보고사항>으로 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이것이 입법예고 등을 거치고 나면 의견들을 받아서 나중에 다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입법예고하기 전에 보고안건으로 처리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것이 정말 획기적인 안이기는 하지만 법률상 나중에 사업자 측에서 인과관계가 없는데 왜 과정금을 물리느냐, 그래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응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또 침해사고 발생시 기술적·관리적 보호 소홀이라고 했는데 개인정보가 그 업체에서도 나올 수 있고 다른 업체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가 확실해야 A업체가 아닌 B업체에도 물리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나중에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듣기로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 무엇이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현재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총괄적인 문제는 확실히 확인이 된 상태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사유입니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공동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방송통신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기금 공동관

리에 따른 기금 관리 · 운용주체의 명확화입니다. 방통위 위원장 단독으로 되어 있는 기금의 관리 · 운용주체를 방통위 위원장과 미래부 장관 공동소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한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사업시행계획은 방통위와 미래부가 기금사업 소관별로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금의 투자 및 출자사업 지원 근거 정비입니다. 현재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나 출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기금의 용도 내에서 투자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화하겠습니다. 참고표시를 보시면 이를 통해 KBS, EBS 등에 대한 출자 근거가 명확하게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기금사업 관리 도모입니다. 출연기관 등 기금사업 수행자의 사업 수행상황 보고 대상에 기금관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국회 소관상임위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현행화하고, 기금위탁 관리기관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직접 명시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마치면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까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이것이 법 개정 발효되는 것이 언제라고 했지요?

○ 이 현 규제개혁법무팀장

- 내년 2월입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해야 하는 것인지요?

○ 이 현 규제개혁법무팀장

- 예.

○ 김대희 상임위원

- 저는 동의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운영하는 것을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미래부는 미래부대로 어디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각자 내는 것입니까?

○ 이 현 규제개혁법무팀장

- 아닙니다. 여기에는 관리운용규정이라고 기금의 관리 ·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만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 두 부처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별도 예산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기금운용안의 기준을 지상파방송에 대한 콘텐츠 진흥의 부분, 일반 PP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규모별로 해서 대충 그 범위 안에서 이쪽에 하라, 저쪽에 하라 그런 취지도 만들 수 있느냐를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그 부분은 이 고시 부분에 정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각의 직제에 따라 각 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한다는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파의 콘텐츠 지원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미래부에 가 있고, 현재 저희가 지상파 쪽을 조금 더 지원해 주려면 미래부와의 부분도 선행해야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와도 협의해야 합니다. 미래부는 특별한 고시에 넣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 협의를 통해 결국 예산에 대해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고시 부분에 넣지는 못할 것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안이 될 때는 지상파에 대한 콘텐츠 진흥이 미래부에서 하겠다,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하든 고시에는 넣지 않더라도 내부 지침상으로 방통위 관할의 지상파나 종편에 대한 부분은 대개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을 정해 놓고 하면 독자적으로 되는데, 이것이 크로스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 이현 규제개혁법무팀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별로 기재부와 예산을 협의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파 관련한 콘텐츠를 저희가 미래부와 어느 정도 역할 분담할 것인지는 실무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MOU를 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위원장님 말씀은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미래부는 미래부대로 기금 사용 부분에 대해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담아서 낼 수 있는 것이고, 미래부는 미래부에서 담아내면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염려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차피 기재부에 가서 기금 심의할 때 중복되는 사업은 걸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기재부에 가서 협의할 때와, 서로 구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미래부와 저희가 중복을 조정해서 기재부에 설명하는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인정해 주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 이현 규제개혁법무팀장

- 참고로 형식적으로는 기금계획을 기재부에 내기 전에 미래부 제2차관, 김대희 상임위원이 위원으로 있는 기금운용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산안에 대해 서로 조정

하고 중복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부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만약 유사한 기능이 들어간다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기금 쓰는 문제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 갈등의 소지도 있고 특별히 미래부와 방통위와 관련이 아닌 가령 아리랑TV, 국악방송, 또 신문윤리위원회 이런 곳에도 방통기금이 나갑니다. 제작지원이라는 측면으로 하면 다른 부서라도 상관이 없는데 운영자금까지 나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 부분은 빨리 과제를 만들어서 각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니까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기타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폐회】